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과제



정 문 택*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그동안 척박하기만 한 우리도서관 토양에 생명수와도 같은 역할을 한 동시에 우리나라 도서관 미래에 큰 희망을 던져주는 좋은 계기를 만든 한편, 그동안 도서관인들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또한 「도서관법」으로 개정(2006.10.4. 공포)되어 그야말로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에 큰 변화와 더불어 희망에 찬 시선이 우리 도서관 저변에서 많이 감지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처럼 도서관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역사창조의 중심적 역할 확보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자기 몸부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아울러 개정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 범주가 큰 폭으로 확대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서관운영에 따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지난 5·31지방선거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도서관 건물규모와 장서수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사서직원 배치비율이 23% 정도 확보된 수준이라고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20% 미만수준으로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해마다 자료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사서직원의 배치비율은 더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사서직원 수를 비교해보면 미국 0.67명, 덴마크 0.45명, 영국 0.11명, 일본 0.06명, 우리나라 0.04명으로 선진국과의 극명한 수치상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지자체의 사서직원 충원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도서관 개관을 앞둔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직문제로 인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으로 공공기관에서 고용불안을 양산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사서직원의 법적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둘째, 도서관의 기본이 되는 장서수에 있어서는 국민1인당 도서관 장서수가 2005년 기준 0.93권으로 덴마크 6.12권, 스웨덴 4.98권, 미국 2.90권 일본 2.36권과 비교해볼 때 아직도 많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료구입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심의 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폭 삭감 또는 최저 예산만을 편성하여 주고 있어 점차 다양해지는 각종 자료들의 망라적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정보제공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지식정보제공의 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어가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정보제공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 우리협회 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 안양시석수도서관장, mt0119@hanmail.net

않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에 찾아가도 입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으로 적서를 적자에게 적시에 제공해 줄 때 그 존재가치가 빛난다. 앞으로 도서관의 고유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풀어야할 과제 중에 하나인 작은도서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 도서관법에 의하면 기존의 특수도서관이나 문고 등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었다. 특수도서관의 문제야 차치하고라도, 문고의 경우 공립문고는 그나마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립문고의 경우에는 현재 최소한의 법적 시설규모만을 갖추고 쉽게 설립신고를 하고, 운영자의 사정에 의해 도서관구입비 등을 지원받기도 쉽게 폐관하는 현실에서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다수의 문고들이 영세하여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언제까지나 설립자의 숭고한 의지에만 의존하며 어려움을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기에는 더욱 무리수가 따른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시설, 직원, 장서 등)을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강화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여 진정한 지역사회의 풀뿌리 도서관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운영문제로 현재 공공도서관의 최우선 기능은 공부방 기능으로 이는 도서관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식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작금의 공공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개인학습을 위하여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 즉, 열람실 부족, 열람실 연장운영, 휴관일 열람실 개방, 식당 운영문제, 휴게시설 등의 민원사항 처리에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듯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실 속에서 사서직원의 전문적인 정보제공 길잡이로서 역량 제고는 먼 이웃나라 이야기인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야 도서관이지 독서실이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열람실을 도서관과 분리하여 전문독서실로 운영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이나, 열람실 축소 방안 등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인식 속에 도서관이 더 이상 독서실이 아니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풀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 선정과 운영방안 및 지역공공도서관과의 협력문제, 운영주체의 이원화문제, 지식정보격차의 해결을 통한 사회적 불균형 해소문제, 낙후된 도서관 시설의 현대화와 사서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공공도서관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도서관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이상향을 꿈꾸며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들이 쌓여 미증유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몸담고 있는 많은 도서관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 누구도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막상 변화를 두려워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기존 의식체계를 과감히 버리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도서관의 변화 패러다임을 잘 읽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도서관정책을 펼쳐나가는 길만이 도서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끝)